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2월 17일
-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7일

3.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 토지가격산정 (조례 제3조 제2항)
  - 과세표준액에 의해 산정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점용기간 산출방법 (조례 제3조 제3항)
  - 년액 및 월액으로 산정하되 15일이상 1월 계상 → 1월미만 삭제
- 점용면적 산정 (조례 제3조 제4항)
  - 점용면적의 ㎡로만 산정 → 가스관등은 m로 한다.
- 점용료의 계산에 의거 원단위 절사방법 (조례 제3조 제5항)
  - 기간 단위 1년으로 50원 단위, 기간 단위 1일은 10원단위

· 지하매설물의 깊이에 따라 점용료 감액 (조례 제3조 제6항)

- 지하 20m이상 1/2감액
- 지하 40m이상 4/5감액

· 정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조례 제3조 제7항)

- 지가 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3년마다 재조정

○ 점용료의 조정 (조례 제4조)

2년이상 도로점용의 경우 10%이상 점용료가 증가할때는 별표 2의 점용료 산식에 의함

○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 제1항 ~ 3항)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재해로 인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때 감면

-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 전액면제
-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 : 감면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 1/2감면

○ 부당이득금 징수 (조례 제10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였을때 그 점용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5. 검토의견

도로법시행령의 개정(93. 8. 14)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토지가격 산정, 점용기간 산출방법, 점용면적 산정, 점용료의 계산에 의거 원단위 절사방법, 지하매설물의 깊이에 따른 점용료 감액, 정액부과징수 경우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감면, 부당이득금 징수등 동 조례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면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는 등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별 첨